

「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, 모두의 보훈」 그들이 지켜낸 어제, 우리가 피워낼 내일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?광고 및 소비자 상담 시 유의사항 안내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도를 기반으로 한 상담 및 판매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현장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시?광고 및 소비자 상담 과정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(표시 · 광고 관련)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인정된 개별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의 상담 후 소분 · 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로, 구성 제품 각각은 사전에 표시?광고 심의를 받은 품목입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, 새롭게 조합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안내문, 라벨, 상담자료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심의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표현*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「식품표시광고법」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 ·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

- 특히, 오프라인 매장이나, 온라인 플랫폼 등 제공 경로와 관계없이 기존 심의받은 내용 외의 표시 · 광고 등 새로운 표시?광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「식품 등의 표시?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부터 심의를 받은 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(소비자 상담 관련) 건강기능식품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, 질병의 예방?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되는 식품입니다. 소비자 상담 시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하고, 기능성 인정 범위 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위 사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내드리는 사항이오니,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(사)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, 사단법인 대한약사회, (사)대한영양사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한약사회장,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

주무관

권우정

사무관

김양수

건강기능식품 전결 2025.07.03.

정책과장 임창근

협조자

시행 건강기능식품정책과-2294 (2025. 07. 03.)

접수 M00015036374

(2025. 7. 3.)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/ <http://mfds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2454 팩스번호 043-719-2450 / kwonwj@korea.kr / 대국민공개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